

## 이것이 알고 싶다

## 제목 : 고시 2002-23호 제12조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 : 이○○

방사선안전기준규칙에 제22조에 의거 배기설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고시 2002-23호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시 제2002-23호 제2호에는 동고시 제6조의 규정수량(배기중배출관리기준)을 만족하면서 별표5(규제면제수량)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최소농도)에 규정된 수량의 100배 이하의 양을 사용하고 후드 안의 공기가 작업실로 거꾸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후드 및 적절한 용량의 보관용기를 설비하였을 때 배기설비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배기설비라 함은 일반적으로 후드와 배출필터박스를 말하는데 규정에 후드가 명시된 것은 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본 규정이 모든 개봉선원을 사용하는 사용장소에는 무조건 후드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근거 [고시 2002-23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배출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사선안전기준규칙 제22조 제3호 및 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및 배기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Sr-90 및 알파입자를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제외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제6조에서 규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5의 (규제면제수량)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최소수량)에 규정된 수량의 10,000배 이하의 양을 사용하고 배출물의 방사능이 충분히 감소될만한 기간동안 보관한 다음 다량의 물로 희석하여 배출할 때
2. 별표5의 제2란의 당해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제3란(최소농도)에 규정된 수량의 100배 이하의 양을 사용하고 후드 안의 공기가 작업실로 거꾸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후드 및 적절한 용량의 보관용기를 설비하였을 때
3. 제1호와 같은 양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후드의 창을 열었을 때의 공기유입속도가 매분당 15m 이상인 후드를 마련하였을 때

응답 : 조미아(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원자력법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서 배기설비는 '배기정화장치, 배풍기 및 배기관 등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즉, 배기필터, 배풍기(Blower) 및 배기라인을 의미합니다.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 및 과기부고시 제2002-23호 제12조(배출시설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후드를 언급한 것은 강제배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서 배기설비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기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배기중의 배출관리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후드를 통한 강제배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봉선원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후드를 설치하여 강제배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 : 전용운반 문의**

**질의 :** 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3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2001. 9. 18) 중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전용운반"이라 함은 단일 송하인이 운반수단, 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최초, 중간 또는 최종 운반단계에서 적재 및 하역이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는 운반을 말한다.

<현황>

- 발전소에서 방사성폐기물드럼을 소내운반하는 경우,
- 단일 송하인이며,
  -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 송하인(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운반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나, 전용운반에 대한 정의(단일 송하인이며,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운반)가 있는데, 이외에 전용운반에 대한 또다른 규정나 조건이 있는지요?

두울, 발전소에서 수행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드럼 소내운반을 "전용운반"으로 보고 있는데, 별다른 의견이 있는지요?

**응답 :** 이복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물질규제2실)

귀하가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전용운반에 관한 규정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3호(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단일 송하인이 운반수단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최초, 중간 또는 최종 운반 단계에서 적재 및 하역이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전용운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